



대경협동조합연합회

대구대학교 · 대경협동조합 연합회

신학협력 협약서

대구대학교와 대경협동조합연합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문인력 육성 및 인재양성을 통한 공동의 협업화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와 제반 업무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양기관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의 교류, 사업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재양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협약 한다.

제2조(협력내용) 협약 당사자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1. 협동조합 공동의 사업모델생성을 위한 상호 네트워크 체계 구축
2.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현장실습, 인턴 실습 등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3. 상호 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 및 공동 연구
4. 교육분야 사업 및 창업 · 취업관련 협조
5.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3조(협약의 이행) 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협약 당사자는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 기관의 업무상 비밀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제5조(비용부담) 상기 합의 사항 수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협약 기간) 협약 내용은 협의서가 체결된 날로부터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제7조(협약의 내용 변경 및 해지) 본 협약의 내용 변경 및 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상호 협의 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014년 10월 7일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총장 흥덕률

홍 력 류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경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인길연

인길연

대구시 동구 아양로 39길 25-1

협약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